

京都府立高等学校をめざすみなさんへ

교토부립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께

府立高等学校に入学した年度に必要な経費は、学校により多少異なりますが、ほぼ次のようになります。

부립고등학교에 입학한 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,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.

2年次以降は、【授業料】（または【受講料】）、【諸費】、【教科書類】が必要となります。

2학년 이후는 [수업료] (또는 [수강료]), [경비] [교과서류]가 필요하게 됩니다.

全日制課程

전일제 과정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【入学料】 | 5,650円 | |
| 입학금 | 5,650 엔 | |
| 【授業料】 | 115,200円 | (年間3回の分割) |
| 수업료 | 115,200 엔 | (년간 3회 분할) |
| 【諸費】 | 約16,000円~30,000円 | (年間2回の分割) |
| 경비 | 약 16,000 엔-30,000 엔 | (년간 2회 분할) |
| 【制服類】 | 約35,000円~60,000円 | |
| [교복류] | 약 35,000 엔-60,000 엔 | |
| 【体操服類】 | 約13,000円~19,000円 | |
| [체조복류] | 약 13,000 엔-19,000 엔 | |
| 【教科書類】 | 約12,000円~21,000円 | |
| [교과서류] | 약 12,000 엔-21,000 엔 | |

定時制課程

정시제 과정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【入学料】 | 980円 | |
| 입학금 | 980 엔 | |
| 【授業料】 | 14,400円 | (年間3回の分割) |
| 수업료 | 14,400 엔 | (년간 3회 분할) |
| 【諸費】 | 約5,000円~20,000円 | |
| 경비 | 약 5,000 엔-20,000 엔 | |
| 【教科書類】 | 約5,000円 | |
| 교과서류 | 약 5,000 엔 | |

通信制課程

통신제과정

【入学料】 450円

입학금 450 엔

【受講料】 約 4,000円

수강료 약 4,000 엔

(1単位につき170円、例えば1年生次で24単位に登録した場合)

1단위 당 170 엔, 예를들면, 1년차에서 24 단위를 등록했을 경우

【諸費】 約 2,000円

경비 약 2,000 엔

【教科書類】 約13,000円~14,000円

교과서류 약 13,000 엔-14,000 엔

※尚、【入学料】、【授業料】、【受講料】の金額は、平成19年度分です。

*또한, 입학료, 수업료, 수강료 등의 금액은 헤이세이 19년도분 입니다.

外国人の生活相談

외국인 생활상담

(財) 京都府国際センター 075-342-0088

(재) 교토부국제센터 075-342-0088

未 定 稿

헤이세이 19년도 취학·수학 또는
전학·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일람

교토부

교토부교육위원회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처음..... | 1 |
| 교토부지원제도담당기관일람..... | 2 |
| 제 1 편 영·유아를위한제도 | |
| 1 모자가정장학금제도..... | 5 |
| 2 사립유치원보육비경감보조금..... | 6 |
| 3 교통비장학금등..... | 7 |
| 4 유치원입학장려사업..... | 8 |
| 제 2 편 초등학생을위한제도 | |
| 1 취학원조사업(보호또는준보호세대분)..... | 11 |
| 2 취학장려금(특별지원학급아동분)..... | 12 |
|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조금..... | 13 |
| 4 수학여행 보조금..... | 14 |
| 5 모자가정 장학금등..... | 15 |
| 6 교통사고 유족 장학금 등..... | 16 |
| 7 외국인학교재학생에의수학보조금..... | 17 |
| 8 모자복지자금대부금..... | 18 |
| 제 3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| |
| 1 취학원조사업(보호 또는 준보호세대분)..... | 21 |
| 2 취학장려금(특별지원학급아동분)..... | 22 |
|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조금..... | 23 |
| 4 수학여행 보조금..... | 24 |
| 5 모자가정 장학금등..... | 25 |
| 6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..... | 26 |
| 7 외국인학교재학생에의 수학보조금..... | 27 |
| 8 모자복지자금대부금..... | 28 |
| 제 4 편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| 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기능취득자금, 입소준비금..... | 31 |
| 2 |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기능취득비·취직준비금..... | 32 |
| 3 | 직업훈련지원제도..... | 33 |
| 4 | 장애인직업적응훈련수당..... | 34 |
| 5 | 모자복지자금대부금..... | 35 |
| 6 | 기능자육성자금..... | 36 |
| 7 | 간호사수학자금..... | 37 |

제 5 편 고등학생,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고등취학보조금..... | 41 |
| 2 | 부립고등학교 지원금 감면..... | 42 |
| 3 | 고등학교 장학금..... | 43 |
| 4 | 교토부내외의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보조금..... | 44 |
| 5 | 과다소밀지역등에 거주하는 고등학생통학보조금..... | 45 |
| 6 | 모자가정장학금등..... | 46 |
| 7 | 교통사고유족성장학금등..... | 47 |
| 8 | 사립고등전수학교생 장학보조금..... | 48 |
| 9 | 정시제 또는 통신제과정교과서 무상급여..... | 49 |
| 10 | 정시제 또는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..... | 50 |
| 11 | 모자복지자금대부금..... | 51 |
| 12 | 생활복지자금대부금(수학자금)..... | 52 |
| 13 | 고등학생수학지원사업(수학금)..... | 53 |
| 14 | 고등학생수학지원사업(수학준비금)..... | 54 |
| 15 |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..... | 55 |

제 6 편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취업준비금..... | 59 |
| 2 | 기능취득자금·입소준비금..... | 60 |
| 3 | 직업훈련지원제도..... | 61 |
| 4 | 장애인직장적응훈련수당..... | 62 |
| 5 | 기능자육성자금..... | 63 |

머리말

인권존중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현재, 교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문제의 해결을 향해,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.

“더 배우고 싶다, ○○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”, “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”.....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,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.

교토부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·수학, 기능취득이나 취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각종의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일본국 헌법 제 97 조에 “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획득을 향한 노력의 성과”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, 여러분의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.

희망하는 분은, 보호자나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하여,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, 스스로의 장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것과 함께,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.

◆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여러 제도 외에, 교토시나 타 시(市)정 (町) 촌 (村) 에서도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, 참고 바랍니다.

◆ 잘 모르시는 부분은, 시(市)정 (町) 촌 (村) 교육위원회나 시의 복지사무소, 구청의 복지담당창구, 또는 다음 페이지의 지원제도 담당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.

◆ 시(市)정 (町) 촌 (村) 에 따라서는, 접수처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.

◆ 각 항목의 내용은,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교토부 지원제도 담당기관 일람

■교토부청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교육청 지도부 학교교육과 | 075-414-5831 | 부(府)민노동부 | 능력개발과 | 075-414-5105 |
|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| 075-414-5835 | 보건복지부 | 의료실 | 075-414-4746 |
|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| 075-414-5846 | 보건복지부 | 생활복지실 | 075-414-4557 |
| 총무부 문교과 | 075-414-4520 | 보건복지부 | 생활복지실(모자담당) | 075-414-4585 |
|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 | 075-414-4367 | 교육청지도부 | 인권교육실 | 075-414-5822 |

■지방기관

◇교육국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오토쿠니(乙訓)교육국 | 075-933-5130 | 츄우탄(中丹)교육국 | 0773-42-1200 |
| 야마시로(山城)교육국 | 0774-62-0008 | 탄교(丹後)교육국 | 0772-22-2175 |
| 난탄(南丹)교육국 | 0771-62-0304 | | |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광역진흥국 · 보건소 | | | | 소관시정촌(市町村) | | |
| 야마시로광역진흥국 | 0774-21-2101 | 오토쿠니보건소 | 075-933-1151 | 무코우시 | | |
| | | | | 나가오카쿄시 | | |
| | | | | 오오야마자키쵸 | | |
| | | 야마시로북(北)보건소 | 0774-21-2192 | 야마시로북(北)츠즈키(綴喜)지점 | 0774-63-5742 | 우지시 |
| | | | | | | 조요시 |
| | | | | | | 쿠미야마쵸 |
| | | 야마시로남(南)보건소 | 0774-72-4300 | 야마시로남(南)츠즈키(綴喜)지점 | 0774-63-5742 | 야와타시 |
| | | | | | | 쿄타나베 |
| | | | | | | 이테쵸 |
| | | 야마시로남(南)보건소 | 0774-72-4300 | 야마시로남(南)츠즈키(綴喜)지점 | 0774-63-5742 | 우지타와라쵸 |
| | | | | | | 기즈가와시 |
| | | | | | | 카사기쵸 |
| 야마시로남(南)보건소 | 0774-72-4300 | 야마시로남(南)츠즈키(綴喜)지점 | 0774-63-5742 | 와즈카쵸 | | |
| | | | | 세이카쵸 | | |
| | | | | 미나미야마시로무라 | | |
| 난탄(南丹)광역진흥국 | 0771-22-0422 | 난탄(南丹)보건소 | 0771-62-4751 | 카메오카시 | | |
| | | | | 난탄시 | | |
| | | | | 쿄탄바쵸 | | |

제1편 영·유아를 위한 제도

| 명칭 | 대여·지급 | 대상자 | 접수처 | 쪽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모자가정장 학금등 | 지급 | 교토부(교토시제외)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 머니로서,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· 영유아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) | 부 보건소 | 5 |
| 사립유치원 보육료경감 보조금 | 지급 |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. 교토부나 시가현, 오오사카부, 효고현, 나라 현 내의 사립유치원에 해당년도 10월1일(만3 세아동은 1월시업일)현재재적하는 원아 2. 보육료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, 과 세 총소득액이 7,110천엔(711만엔)이하인 자 | 사립유치원 | 6 |
| 교통사고유 족아동 | 지급 | 부내(교토시 포함)에 거주하는, 교통사고에 의 해 부모를 잃은 영·유아 | 부교통대책과 부광역진흥국 | 7 |
| 유치원입학 장려사업 | 감면 | 1.공립유치원 생활보호세대 · 시정촌(市町村)민세 비과세세 대 · 시정촌(市町村)민세 비과세세대 2.사립유치원 ①생활보호세대 · 시정촌민세비과세세대 ②시정촌민세소득 비과세세대 ③시정촌민세소득 과세액 34,500엔 이하의 세 대 ④시정촌민세소득 과세액 183,000엔 이하의 세대 | 시정촌교육위원회 (유치원) | 8 |

[영·유아를 위한 제도]

(사립유치원 보육료 경감보조금)

| | |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명 | 사립유치원보육료경감보조금 | |
| 사업주체 | 교토부 | |
| 취지·목적 |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가진 보호자의 보육료부담경감과 영·유아교육의 진흥을 꾀함 | |
| 대여·지급 | 지급 | |
| 대상자 |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나 시가현, 오사카부, 효고현, 나라현 내의 사립유치원에 해당년도10월1일(만3세아동은 1월시업일) 현재 재적하는 원아 2 보육료부담자가 교토부 내 거주하고 과세 총소득액이 7,110천엔(711만엔)이하인 자 | |
| 지급액 | 연간 17,000엔 단, 부담하는 보육료가 연간 17,000엔미만인 경우는 해당 액수 지급 | |
| 신청시기 | (3세, 4세, 5세 아동) (만3세아동) | 9월~10월경 12월~다음 해 1월경 |
| 신청서류 | 신청서, 소득 증명 서류 | |
| 지급시기 | (3세, 4세, 5세 아동) (만3세아동) | 12월~ 다음 해 1월경 3월경 |
| 병행지급 | | |
| 접수처 | 사립유치원 | |
| 담당과 | 총무부문교과(075-414-4520) | |
| 비고 | | |

[영·유아를 위한 제도]

(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)

| | |
|-------|--|
| 사업명 |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사업 |
| 사업주체 | 교토부 |
| 취지·목적 |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아동 또는 학생에게 정신적, 경제적으로 원조하여, 건전한 육성을 꾀함 |
| 대여·지급 | 지급 |
| 대상자 | 부내(교토시 포함)에 거주하고,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·유아 |
| 지급액 | 장학금 11,000엔(연간) |
| 신청시기 | 5월말일 (이후는 수시접수(단, 다음 해 2월 말일까지)) |
| 신청서류 |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신청서 |
| 지급시기 | 7월말일 (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,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에 지급) |
| 병행지급 | 모자가정 장학금 등과의 병행지급은 불가 |
| 접수처 | 부 교통대책과, 부 광역진흥국 |
| 담당과 |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(075-414-4367) |
| 비고 | |